

□ 포장재 재활구조 시험분석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업무 협약서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포장재 재활-구조개선 제도(이하 '제도'라 한다)"에 따른 포장재 재활-구조 시험분석 등의 효율적이고 우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포장재 재활-구조 시험분석 등 관련 분야에 공동 협력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포장재 재활용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상대기관의 제반 규정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시험분석)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포장재에 대한 포장재 재활-구조 시험분석에 대해 협력한다.

1. 유리병 포장재
2.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포장재
3. 합성수지 단일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4. 합성수지 복합재질 용기·트레이·필름·시트형 포장재
5. 기타 포장재

제4조 (협약사항)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1. 공제조합 시험분석 의뢰
2. 연구·시험시설의 공동 활용
3. 정보교류 및 지원 사업
4. 기타 교류 활성화 및 우호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사항 등

제5조 (시험분석 의뢰)

- ① 시험분석과 관련된 사항은 양 기관의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의뢰 절차는 연구원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 ② 공제조합이 연구원에 의뢰하는 시험에 대하여 비용 및 시험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단, 용역시험 및 국가사업을 통한 시험의뢰 수수료는 제외한다.

제6조 (연구·시험시설의 공동 활용)

- ①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된 상대 기관의 장비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조건은 시설을 보유한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소요되는 비용은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해서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제7조 (정보교류)

- ① 양 기관은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설명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양 기관은 도서, 간행물, 규격정보 등의 제반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며, 발간된 자료는 상호 교환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연구수행)

- ①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협력방법은 공동연구, 위탁연구, 과제참여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조건은 양 기관이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상대기관의 업무내용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호협의)

- ①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및 협약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양 기관의 상호나 대표자(또는 협약자)가 바뀔 경우에도 본 협약은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협약변경) 본 협약서의 내용은 양 기관의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협약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이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필요 시 서면합의에 의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양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4월 30일



이사장

김진석

황해비즈니스본부장

박형근



□ 포장재 재활구조 시험분석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업무 협약서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포장재 재활·구조개선 제도(이하 '제도'라 한다)"에 따른 포장재 재활·구조 시험 분석 등의 효율적이고 우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포장재 재활·구조 시험분석 등 관련 분야에 공동 협력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포장재 재활용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상대기관의 제반 규정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시험분석)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포장재에 대한 포장재 재활·구조 시험분석에 대해 협력한다.

1. 종이팩 포장재
2. 금속캔 포장재
3.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4. PET병 포장재
5. 기타 포장재

제4조 (협약사항)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1. 공제조합 시험분석 의뢰
2. 연구·시험시설의 공동 활용
3. 정보교류 및 지원 사업
4. 기타 교류 활성화 및 우호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사항 등

제5조 (시험분석 의뢰)

- ① 시험분석과 관련된 사항은 양 기관의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의뢰 절차는 연구원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 ② 공제조합이 연구원에 의뢰하는 시험에 대하여 비용 및 시험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단, 용역시험 및 국가사업을 통한 시험의뢰 수수료는 제외한다.



제6조 (연구·시험시설의 공동 활용)

- ①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된 상대 기관의 장비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조건은 시설을 보유한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소요되는 비용은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해서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제7조 (정보교류)

- ① 양 기관은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설명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양 기관은 도서, 간행물, 규격정보 등의 제반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며, 발간된 자료는 상호 교환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연구수행)

- ①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협력방법은 공동연구, 위탁연구, 과제참여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조건은 양 기관이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상대기관의 업무내용 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호협의)

- ①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및 협약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양 기관의 상호나 대표자(또는 협약자)가 바뀔 경우에도 본 협약은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협약변경) 본 협약서의 내용은 양 기관의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협약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이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필요 시 서면합의에 의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양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4월 30일



이사장 김진석



융합기술본부장 김영근

